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·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(개인정보 누설 등)·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(정보통신망 침해 등)·건조물 침입·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



법률 위반(공동주거침입)

[서울서부지방법원 2011. 12. 14. 2011고정1406]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이정민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(유) 태평양 외 1인

【주문】

1

피고인 1 주식회사를 벌금 1,000만 원에, 피고인 2를 벌금 250만 원에, 피고인 3을 벌금 400만 원에, 피고인 4를 벌금 250만 원에, 피고인 5를 벌금 400만 원에, 피고인 6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.

피고인 2, 3, 4, 5, 6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개인정보수집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점은 각 무죄.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1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